**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고객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가비아(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갑”의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개인정보를 위탁한 “갑”에게 있다.

③ 메시지 발송 대행 업무 위탁 시 별지에 규정된 서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4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년 월 일

|  |  |
| --- | --- |
| 갑후보자(예비후보자) 주소가비아 아이디: 성 명: (인) | 을㈜가비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삼평동) 유스페이스1 B동 4층성 명: 김 홍 국 (인) |

**[별지 제1호 서식]**

|  |
| --- |
| **선거문자 발송 위탁 계약에 대한 보안 및 선거법 준수 서약서**고객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가비아(이하 "을"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제 3조의 위탁 업무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갑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선거법 준수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 및 선거법 관련 법규를 숙지 및 준수한다.
	2.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통해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8회(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기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발신번호만을 사용한다.
	3.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 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 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 운동 정보에 명시한다.

가. 선거 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자의 전화번호다.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라. 수신 거부의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수신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한 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재전송하지 않음을 준수한다.
	2.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비방 및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2. 갑의 정보 보호 정책과 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는 갑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한다.2018 년 월 일후보자(예비후보자) : (인) |